

[별표 1]

품질·성능 평가기준

(제4조 관련)

시험항목	품질·성능 평가기준	시료수 ¹⁾
1. 감쇠력 특성 시험	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가진 속도는 0.3 m/s로 한다. <1 800 cm ³ 이상> - 전륜(front) 인장 848 N이상, 압축 167 N이상 - 후륜(rear) 인장 431 N이상, 압축 178 N이상 <1 800 cm ³ 미만> - 전륜(front) 인장 714 N이상, 압축 186 N이상 - 후륜(rear) 인장 301 N이상, 압축 128 N이상	4
2. 초기 가스압력 시험 (가스식의 경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피스톤 로드 직경이 12.5 mm에서 16 mm인 경우는 가스압력 하중이 60 N이상일 것 • 피스톤 로드 직경이 18 mm에서 25 mm인 경우는 가스압력 하중이 70 N이상일 것 	
3. 온도특성 시험	저온 감쇠력 변화율은 300 % 이하이어야 한다.	
4. 커링부 인장강도 시험	커링부 인장강도는 19 600 N이상일 것	4
5. 연속작동 내구시험	가진 속도 0.3 m/s에서 내구시험 전·후 감쇠력 변화율은 30 % 이내이어야 한다. 누유가 없고, 외관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.	4
비고	인증부여는 1 800 cm ³ 미만과 1 800 cm ³ 이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부여 한다. 이에 따라 신청한 부품이 배기량에 맞게 감쇠력 특성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.	

- 1) 재제조제품의 품질성능·평가지험에 사용될 시료는 원칙적으로 최종 출하 전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공 정인 경우 가장 최근에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양산품 중 **KS Q 1003** (랜덤 샘플링 방법)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.